

#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개정 2015. 4.2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논문 제출 직전 학기까지 국내외 학술발표 1회 또는 국내 전문학술지 등재(후보지) 논문 1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논문 발표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수회의를 통해 지정한 기한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공과목은 석사 3과목이상으로 한다.
- ③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④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 ⑤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⑥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63점 이상
4. TOEFL(iBT) 57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6. 단, 위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못할 시에 별도의 영어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능력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4.20.)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본 학과의 논문지도위원회는 구성 운영하지 않는다.

**제7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 4.2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학술지게재 확인표

[건축학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

작성일 : 20 . . . 년 . . . 월 . . . 일

작성자 :

## 1.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

성명		석사과정기간	20 . . . ~ 20 . . . (년 개월)		
청구논문제목					
지도교수		전공분야			
현직장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 2. 발표논문의 실적요약

구분	심사대상논문(건)
국외논문	
국내논문	
국외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 3. 논문발표실적

구분		논문명	저널명/ 발표기관	년월	저자명 (순서)
논문지게재	국외				
	국내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	국외				
	국내				
기타사항					

## 4. 특허실적

구분	특허명	등록(출원)번호	등록일	등록자
국내				
국외				

붙임 ; 증빙자료 3부